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1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변론 종결2021. 1. 12.

판결 선고2021. 1.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21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G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139,3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그 대표자인 E은 위 리스계약 관련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2020. 2. 14.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합계 18,535,122원(원금 13,589,006원, 송무비 제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은 2017. 9. 18.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213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통영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와 E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17. 9. 18.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월리스료, 2020. 2. 1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연대보증인인 E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나아가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서과 준비서면을 한 차례 제출한 이래 위 매매예약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 내역, 피고와 E과의 관계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E 간의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E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지희

별지